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성흠제 도시안전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 소 양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 감면 시행을 통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 현행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독립유공

자와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이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하여 하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